

방송통신정책연구
09-진흥-가-22

통신서비스 공공안전에 관한 제도 연구

(Study on Public Safety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2009. 11. 30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09-진흥-가-22

통신서비스 공공안전에 관한 제도 연구

(Study on Public Safety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2009. 11. 30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괄책임자 : 박소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통신서비스 공공안전에 관한 제도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년 11 월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괄책임자 : 박소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참여연구원 : 정영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요 약 문

1. 제목

통신서비스 공공안전에 관한 제도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협조하기 위한 감청기능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어(2008.10.30),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부처의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률의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설비 구비 의무를 가지게 될 경우, 협조의무를 가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유예, 이행강제금 부과, 비용 보전 조치 등 감청 제도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내에서의 감청 제도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 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주요 국가에서의 통신제한조치 제도 수립 및 시행 현황, 감청 제도 시행을 위한 조직 체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의 통신제한조치 적용 대상 사업자, 협조의무 유예절차, 비용보전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과제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협조 제도 관련 국외 사례 조사 연구
 -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 및 세부 시행현황 조사 분석

-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방안 및 추진체계 연구
-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협조를 위한 하위 법령 연구
 - 통신제한조치 적용 대상 전기통신사업자 선정방안 연구
 - 사업자 설비 구축 의무 면제 및 의무 유예절차 연구
 - 법 집행을 위한 비용보전 방안 및 비용보전 절차 연구
 - 설비 미구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범위 및 합리적 운용방안 연구
 - 전기통신사업자 및 법 집행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하위 법령에 대한 연구, 검토 추진

4. 연구내용 및 결과

본 과제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협조 제도 관련 국외 사례 조사 연구
 -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주요 국가의 통신제한조치 제도 및 시행 현황 분석
 - 유럽 및 미국의 통신비밀자료 보관에 관한 제도 분석
 - 국외 감청제도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
 - 국내 통신제한조치 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검토
-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협조를 위한 하위 법령 연구
 - 통신제한조치 협조의무 부과 대상 전기통신사업자 범위 검토
 - 통신제한조치 협조설비구축 의무 유예절차 검토
 - 통신제한조치 협조설비 구축비용 보전방안 검토
 - 통신제한조치 협조설비 미구축에 대한 이행강제 방안 검토

5. 정책적 활용내용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협조설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통신비

밀보호법의 개정 및 정책 수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검토 결과는, 국내 감청제도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협조 의무 대상의 범위,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유예기간 부여 등에 대한 이슈 검토 결과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의 하위법률 개정에도 활용되어, 국내 감청제도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기대효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 감청제도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법률 개정 과정에서는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국회 및 관계 부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률을 효과적으로 제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1. Title

Study on Public Safety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revised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which intends to impose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the LI cooperation obligations for lawful interception of LEA, is proposed by Mr. Hansung-Le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2008.10.30), is pending. The pending Act is on the discussion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other related 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national lawful interception policies when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have the cooperation obligations to provide lawful interception capabilities to support LEA, many issu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LI regulations need to be investigated: scope of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who have the obligations, grace of cooperation obligations of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penalty for disobedience to LI regulations, cost recovery to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for the cooperation obligations, and other issues to be solved for lawful interception regulations. Addition to this, role allocation of organizations for national LI regulations needs to be investigated. Considering these, foreign cases, including USA, Netherlands, Germany, UK, etc, on these issues are analyzed firstly. A plan is investigated for national lawful interception regul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ontents and scope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o Investigation of cases of foreign lawful interception and data retention regulations
 - Cases of foreign LI regulations and enforcement
 - Roles of organizations for LI regulation and enforcement
- o Investigation for lawful interception regulations and enforcement
 - Scope of lawful interception obligation subjects
 - Postponement of cooperation obligations
 - Cost recovery for LI cooperation
 - Penalty for violation of LI obligations
 - Planning of national lawful interception regulation with cooperation of telecommunication providers and related national organization

4. Research Results

Research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 o Investigation of cases of foreign lawful interception regulation and enforcement
 - Status of lawful interception regulation and enforcement of USA, Germany, Netherlands, UK, and other countries
 - Status of data retention regulation and enforcement of Europe and USA
 - Roles of organizations for LI regulations and enforcement
 - Investigation of roles of national organizations for LI regulation and enforcement
- o Investigation of lawful interception regulation
 - Investigation of scope of lawful interception obligation subjects

- Investigation of postponement of lawful interception obligations
- Investigation of cost recovery for lawful interception cooperation
- Investigation of penalty for violation of lawful interception obligation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Issues about the amendment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especially related with the obligation of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to cooperate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to execute lawful interception, are analyzed and investigated in this project. The results of this project can be used as a base for national lawful interception regulations and enforcement.

The research results for scope of LI obligation subjects, scope and procedure of cost recovery for lawful interception obligations, determination of grace period for lawful interception obligations are expected to be used for the amendment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national LI regulation. Finally the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ffective establishment of national LI regulations.

6. Expectations

Issue analysis result about national lawful interception policy which are related with the amendment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can be use to contribute to effective LI regulations and enforcement.

During the amendment of the Act, the investigation result can be used to support discuss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national organizations. It finally can support to establish LI related regulations and to enforce the revised Act.

목 차

제 1 장 국외 통신비밀 협조 관련 제도 연구	
제 1 절 국외 통신제한조치 제도 시행 현황	
1. 미국	
2. 네덜란드	
3. 독일	
4. 영국	
5. 기타 국가	
제 2 절 국외 통신비밀자료 보관 제도 시행 현황	
1. 유럽	
2. 미국	
제 3 절 통신제한조치 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1. 국외 사례	
2. 국내 추진체계 검토	
제 2 장 통신제한조치 제도 시행 방안 연구	
제 1 절 통신제한조치 적용 대상 선정 방안	
1. 배경	
2. 외국사례	
3. 고려사항	
4. 검토	
제 2 절 협조의무 면제 및 유예절차	
1. 배경	
2. 외국사례	
3. 검토	
제 3 절 협조의무준수 비용보전 방안 및 절차	
1. 배경	
2. 외국사례	
3. 검토	
제 4 절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1. 배경	
2. 외국사례	
3. 검토	

Contents

Chapter 1. Foreign LI and DR Regulations	
Section 1. Foreign lawful interception regulations	
1. USA	
2. Netherlands	
3. Germany	
4. United Kingdom	
5. Other countries	
Section 2. Foreign data retention regulations	
1. Europe	
2. USA	
Section 3. Roles of organizations for LI regulation	
1. Cases of foreign countries	
2. Investigation of LI related organization	
Chapter 2. Investigation of LI enforcement policy	
Section 1. Scope of lawful interception subjects	
1. Introduction	
2. Cases of foreign countries	
3. Considerations	
4. Investigation	
Section 2. Postponement of cooperation obligations	
1. Introduction	
2. Cases of foreign countries	
3. Investigation	
Section 3. Cost recovery for LI cooperation	
1. Introduction	
2. Cases of foreign countries	
3. Investigation	
Section 4. Penalty for violation of LI obligations	
1. Introduction	
2. Cases of foreign countries	
3. Investigation	

표 목 차

<표 1> 통신비밀 데이터 보관에 관한 EU의 규정	
<표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15조의2제2항	
<표 3> 미국 감청적용 사업자의 국내 사업자와의 대응	
<표 4> 국내 전기통신역무 분류	
<표 5> 전송역무 협조의무 부과 여부 검토	
<표 6>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협조의무 부과 여부 검토	
<표 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부칙 제4조	
<표 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15조의2제4항	
<표 9>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15조의3	

그 립 목 차

<그림 1> 미국에서의 수사 목적의 감청 집행 구조
<그림 2> 미국에서의 안보 목적의 감청 집행 구조
<그림 3> FCC의 조직 구성도
<그림 4> FCC PSHSB 조직 구성도
<그림 5> 영국의 감청 집행 구조
<그림 6> 영국 NTAC와 내무부의 역할
<그림 7> 영국 내무부 조직 구조
<그림 8> 독일의 감청 집행 구조
<그림 9> 독일 Federal Network Agency 조직 구조도
<그림 10> 현행 통신제한조치 시행 및 보고 절차
<그림 11> 통비법 개정안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제 1 장

국의 통신비밀 협조 관련 제도 연구

제 1 장 국외 통신비밀 협조 관련 제도 연구

제 1 절 국외 통신제한조치 제도 시행 현황

1. 미국

가. CALEA의 제정

1994년 이전 미국에서는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34) 등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통신서비스 감청을 집행하였으나, 이동통신 등 다양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감청 규제 체제 하에서의 효과적으로 감청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미 정부는 1994년 10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집행을 위한 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CALEA(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법집행을위한통신지원법)를 제정하였다.

CALEA에 따르면, 유선전화 사업자, 이동전화 사업자, 일부 재판매 사업자 등 유선 또는 전자통신의 송신 및 교환에 관여하는 사업자 등은 CALEA에서 규정하는 지원능력 요구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정보서비스 제공업자, 사설 네트워크 제공업자, 기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가 법무장관과 협의하여 제외한 통신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능력요구사항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CALEA에서는 앞서 설명한 능력요구사항과 더불어, 감청협조설비의 용량요구사항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법무장관은 법 제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감청 수량을 예측하여 감청 장비의 최대 및 실제 수량을 고시해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CALEA 제정 4년 이내에 실제용량을 수용하고, 최대 용량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감청설비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하여 CALEA에서는 감청 설비나 장비는 법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감청 수행과 통화식별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환으로, FCC는 1999년 3월, 위의 감청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

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담은 “System security and integrity”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서는 감청 보안 관리 측면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직원의 감독/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 수립, 그리고 감청과 정보 접근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기록 보관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감청협조설비 구비를 위한 표준의 참고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 통신장비제조업체 등이 표준개발기구나 FCC에 의해 채택된 기술요건 또는 표준을 준수할 경우 CALEA에서 정하는 능력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능력요구사항 준수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는 CALEA 시행일 이후 4년 이내에 능력요구사항을 구비해야 하며, 준수일 이전에 설치 또는 설치 계획된 장비,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회 이상 준수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회 신청 시 연장 기간은 연장이 허용된 날로부터 2년을 넘지 못하여, 이 규정에 근거하여 많은 통신사업자들이 1회 이상 능력요구사항의 준수 시점을 연장한 바 있다.

CALEA 능력요구사항의 준수를 위하여 199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도입된 장비, 설비 및 서비스를 수정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여, 예산 가용성에 따라 법무장관이 비용지급을 동의할 수 있다. 1995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된 장비 등의 경우 사업자의 청원이 있을 경우 능력요구사항 준수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비용을 제공하도록 법무장관이 동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ALEA 시행을 위해 미 의회는 네트워크 변경과 관련하여 통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 2004년 말까지 약 \$445M를 집행하였다. 2004년 이후의 예산 집행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감청 집행과 관련하여, 법무장관은 매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장은 법무장관의 비용 지급에 대한 비용 타당성, 효율성 및 추정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능력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 또는 법무장관은 해당 의무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최고 1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 CALEA의 확대 적용

FCC는 2005년 8월, 설비기반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업자 (facilities-based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및 상호연동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 제공업자(interconnected VoIP service provider)에게 CALEA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의무 준수를 위하여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이 발표 이전에는 인터넷접속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정보서비스로 분류되어 CALEA에서 정하는 능력요구 사항 준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설비기반 광대역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자 및 상호연동 VoIP 서비스 제공업자는 2007년 5월까지 CALEA 준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2007년 말까지 해당 사업자들은 감청 기술표준 개발 및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등, CALEA 준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말 기준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및 상호연동 VoIP 서비스의 제공업자는 CALEA 준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2. 네덜란드

가. 감청 규제

네덜란드는 1970년대부터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기반의 유선전화서비스에 대하여 감청을 수행하여 왔다. 초기에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전화통화에 대해서만 감청이 가능하였으나, 감청 방식이 액세스 기반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발전함에 따라 2003년부터 호 전환이나 메일박스 등의 지능형 전화서비스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동전화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아날로그 네트워크에 대하여, 1990년 중반부터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에 대하여 감청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메일을 비롯한 IP 서비스에 대한 감청은 2001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감청은 2004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감청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Code of Criminal Procedure(형사소송법), State of Security Acts(국가보안법), Telecommunication Act 1998(통신법) 등에서 규

정하며, 이 법들은 감청 집행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주로 감청 요청에 따른 감청의 시행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통신법에서는 주로 감청 수행과 관련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한다.

감청이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는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방법인 만큼, 형사소송법에서는 감청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 대상 범죄가 4년 구금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범죄일 경우
-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 경우
- 수사가 감청을 통하여 마무리될 수 있으며, 감청 결과가 혐의 대상자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감청하고자 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급받아 감청을 수행할 수 있다. 영장 심사 시 법원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감청보다 감청 대상자의 사생활을 덜 침해할 방법이 없는지의 여부와, 감청 필요성과 사생활 침해의 경중을 비교하여 감청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밖에도, 감청 결과의 활용 및 감청 사실의 통보 등과 관련하여 감청 오남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 감청 의무 부과

네덜란드 통신법에서는 감청 수행과 관련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전기통신네트워크 및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들로 하여금 서비스 개시 시점에 감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는 공공전기통신네트워크 및 공공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설 네트워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전기통신네트워크 및 공공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는 통신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게 그들의 네트워크와 서비스에의 접속을 제공하고, 당국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을 가진다.

통신법에 따라 감청 관련 비용 중 감청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구조적 비용과 임시비용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수사기관으로의 감청 정보 전달과 관련된 관리비용 및 인력비용 등 감청 수행 관련 비용은 수사기관이 부담한다.

다. 감청 정보 처리

감청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전기통신네트워크 및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는 당국이 전기통신을 기록 및 도청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등)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 외의 이용자 데이터(이용자 및 가입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또는 트래픽 데이터(통신서비스의 실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선불 전화카드와 같이 제공업자가 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제공업자는 트래픽 데이터 등 다른 데이터를 보관해야 할 수 있다.

제공업자들은 당국이 운영하는 중앙정보지점에서 24시간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제공업자가 당국으로 감청정보 전달 시 제공업자의 네트워크 혹은 서비스와 당국의 설비 간 연결이 사람들이 전기통신의 내용을 알아챌 수 있게 되어있다면, 전기통신은 당국이 제공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방식에 따라 암호화되어야 한다. 감청 및 전달 포맷에 대한 기술 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당국의 몫이며, 이 때 당국은 해당 제공업자와 이에 대하여 상의해야 한다.

라. 감청 보안 관리

네덜란드는 2003년 10월에 전기통신의 감청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전기통신네트워크 및 공공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취해야 하는 보안 조치를 담은 법령(Decree on security of data on telecommunication lines tapped)을 발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공업자는 지정된 데이터 및 정보에의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막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함
- 보안 조치가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명시
- 제공업자는 보안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제공업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보안 계획을 준비해야 함
- 당국으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요청을 받을 경우, 제공업자는 보안 계획에 대한 당국의 검사를 허락해야 함

- 제공업자는 지정된 종류의 데이터 또는 정보의 기밀과 관련하여 승인되지 않은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함
- 제공업자는, 감청과 관련하여 특정한 임무를 맡은 직원들이 그 임무 및 그들이 취득하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기밀을 지키도록 해야 함
- 제공업자가 작업 수행을 위해서 제3자와 계약을 맺고, 제3자가 감청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경우, 제공업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정해진 보안 수칙을 지키도록 해야 함

이 밖에도, 이 법령에서는 승인되지 않는 자가 감청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조치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별도의 부록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독일

가. 감청 규제

독일의 경우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전기통신감청(시행)령(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Ordinance) 및 시행규칙(Technical Directive)에 기반을 두어 감청의 기술적인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전기통신법은 통신시장의 모든 부분을 관할하는 법으로, 제110조에서 감청의 기술적 수행에 대한 사항들을 다룬다. 전기통신감청령은 감청 관련 의무를 가지는 주체의 범위와 기본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절차와 승인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전기통신법과 전기통신감청령은 의회 입법을 통하여 제/개정 이루어지며, 경제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재무부, 내무부 등의 정부부처가 전기통신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였다. 연방 네트워크 중개소(Federal Network Agency)는 감청에 대한 기술적 요구를 담당하는 정부기구로서, 해당 당국 및 산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책임을 맡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5~1997년에 최초로 전기통신감청령을 만들어 통신서비스에 대한 감청을 시작하였다. 1999년에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의 감청 규격인 ES 201 671(Telecommunications security; Lawful Interception (LI); Handover interface for the lawful interception of

telecommunications traffic)을 출판하였으며, 2001년에 ES 201 671과 인터넷 상의 전송 보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나. 감청 의무 부과

전기통신법에서는 공공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영자로 하여금 감청 수행을 위한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PSTN 유선전화, GSM과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기반의 이동전화, 이메일,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등의 공공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영자는 감청 기능 구비 등의 의무를 가진다. 이 때, 감청 기능의 구비는 전기통신설비 운영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전기통신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공공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에 대한 감청이 누구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규제관청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공공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영자라 하더라도, 사설 네트워크, 인터넷으로의 연결에 이용되는 통신망연결점, 1,000명 이하의 가입자를 가진 소규모 설비 등의 경우에는 감청 기능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단말기가 외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전기통신의 경우도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감청 보안 관리

전기통신감청령은 감청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설비의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감청 시스템의 보안 관리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아래의 항목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기술설비 보호 요구사항: 협조의무자는 감청기능과 정보전달 접속지점 통제를 위한 기술설비를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감청사본 보호 요구사항: 권한 없는 자가 감청사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함
- 비밀 유지: 협조의무자는 권한 없는 자가 법적처분이 전기통신 시스템에 구현된 방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감청 조치와 관련된

정보 보호를 공고히 해야 함

- 설비 사용 기록: 감청설비를 사용할 때마다 데이터 입력 사항이 빠짐없이 자동
으로 기록되어야 함. 접근 권한과 삭제 기능의 기술적 구현을 위한 요구사
항에 대하여 규정

이 밖에, 로그기록 데이터의 검사와 삭제, 서류의 파기와 관련된 절차 및 요
구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 IP 서비스 감청

인터넷전화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단말 간에 운용 장비 없이 통신
이 이루어지는 peer-to-peer 형태의 서비스와 트래픽이 서버를 경유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P2P 형태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업자는 감청 기능 구
비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P2P 형태의 인터넷전화를 감청하고자 할 경우
에는 인터넷 접속 포인트에서 감청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버를 통한 인터
넷전화서비스의 경우 1,000명 이상 가입자를 가진 제공업자는 감청 협조 의무를
가지며, 10,000명 이상 가입자를 가진 경우에는 인터넷전화에 대한 감청을 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4. 영국

가. 감청 규제

영국은 1985년에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ct(IOCA)를 제정하여 통
신서비스에 대한 감청을 시작하였다. 법 제정 당시에는 PSTN 기반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만 감청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데
도 큰 문제가 없었다. IP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IOCA에 기반을 두어 감청을 집
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1999년에 국회위원, 시민, 수사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감청 정책 개정을 위한 협의절차(consultation process)을 시작하였으며, 그
다음 해에 RIPA 2000(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을 제정하
였다. RIPA 2000은 모든 종류의 감시/감독을 그 범위로 하고 있는데, Part 1에서
감청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 중립적으로 제정되어 다양한 통신 기
술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안당국, 수사기관 등 9개의 기관에 대해서 감청을 허가하고 있으며, 감청은 국가의 보안 등 주요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청 결과를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청 의무 부과

RIPA 2000에 근거하여 공공우편서비스 또는 공공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소속장관이 발부한 통지서에 기술된 모든 감청 협조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

감청 협조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가지는 제공업자 중, 가입자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는 직접 감청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감청 기능을 직접 구비하지 않고 감청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RIPA grant를 이용하여 초기 감청기능 구축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지만 감청 능력의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공업자가 부담한다.

5. 기타 국가

가. 일본

현재, 일본의 감청 제도는 "Communications Interception Law, 1999"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Communications Interception Law는 1999년 8월, Japanese legislative assembly(Diet)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몇 번의 수정을 거쳐 2000년 8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도청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왔다. 이 법에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직적 살인, 불법방화, 마약 밀매, 불법 이민 등의 범죄에 대하여 전화, 팩스 및 인터넷 상에서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 성직자들의 통신은 원칙적으로 감청하지 못하며, 특별한 상황에서만 감청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또한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모든 인터넷 통신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국장(관리자)급 이상의 경찰, 마약 감사관 및 일본 해상보안청 (Maritime Safety Agency) 공무원 등의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하여 감청을 집행할 수 있다. 영장은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발급되며, 기간은 기본적으로 10일이며,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통신서비스 제공업자 또는 지방 정부의 직원 등,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감청 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통신이 감청된 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후에 그 통신에 관한 문서들은 파괴되어야 한다. 감청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spot monitoring (통신의 특정 부분만 감청할 수 있어야 하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청은 중단되어야 함) 방법이 이용된다. 이 법에서는 감청에 이용되는 장비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5건의 감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청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베트남

베트남의 통신시장은 200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IT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통신서비스 감청을 위하여 수립된 제도 및 규제는 파악되는 바가 없다. 다음 단락에서 기술된 베트남의 통신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감청제도를 수립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의 통신 산업은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이동통신 위주로 성장하였으며, 이동통신 시장은 3대 국영통신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 건수는 2008년 초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말 기준 6,400만 건의 가입을 기록하고 있으나 (총 인구: 약 8,600만 명), 이동전화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이 6달러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통신 산업은 IT 인프라가 열악하며, 통신 환경은 아시아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에서 여러 시스템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통신 관련 법률 체계가 정비 단계에 있으며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많고, 통신 산업 관련

정확한 통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정보통신부(MIC)에서 제공하는 통신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통신서비스 감청 관련 법률은 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 최초의 통신관련 법률은 2001년 10월에 승인된 “2010년까지의 통신 산업 개발 전략”으로, 현재까지 제정된 많은 법률이 통신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에 해당된다.

다. 홍콩

홍콩에서의 통신서비스 감청 관련 사항은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nd Surveillance Ordinance (Cap 589), 2006 (이하 통신감청법)”에서 규정된다. 이 법은 통신서비스 감청 집행을 위한 승인 절차 등을 주로 기술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 등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감청 설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청 관련하여 1997년 6월에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Ordinance (Cap 532)”이 제정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발효일이 공표된 바가 없어 유효하지 않은 법률인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감청법에서는 주로 감청 집행을 위한 승인의 발급 기준 및 절차, 승인을 판단하는 패넬판사(panel judge)의 구성, 위원(commissioner) 임명 및 역할, 보안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통신감청법에서는 감청의 종류를 Type 1 감청과 Type 2 감청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Type 1 감청은 Type 2 감청 이외의 감청을 말하며, Type 2 감청은 도청장치 또는 영상 도청장치 등을 이용하여 감청 대상자의 인지 하에 이루어지는 감청을 말한다. Type 2 감청에서 이용되는 감청장치는 허락 없이 다른 장비에 추가/반입되거나,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감청 대상자의 허락 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형태의 감청은 Type 1 감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기관의 Type 1 감청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감청 승인서에서 감청설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도 있으며 (의무사항 아님), 이를 기반으로 Type 1 감청을 수행하는 자는 감청설비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감청 승인서에서 특정 장소에서 감청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할 경우,

적절한 권한을 사용하여 그 장소 등에 감청설비를 반입할 수 있음

- 감청 승인서에서 특정 감청대상(object)에 대하여 감청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할 경우, 적절한 권한을 사용하여 감청대상이 있을 만한 장소 등에 해당 감청설비를 반입할 수 있음
- 감청 승인서에서 특정 사람의 대화, 행동 및 위치를 감시하기 위하여 감청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할 경우, 적절한 권한을 사용하여 감청 집행을 위한 장소에 해당 감청설비를 반입할 수 있음

Type 1 감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진술서 작성 시, 감청이 이루어질 장소 또는 대상(object)을 알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라.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수사기관에게 컴퓨터에의 접근, 문서 압류, 대화감청 등을 허용하는 법률로 Computer Misuse Act 1993, Criminal Procedure Code, Internal Security Act 1960,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8, Telecommunications Act 1999, Statutes (Miscellaneous Amendments) Act 2005 등이 있다. 위의 통신서비스 감청 관련 법률에서는 주로 승인되지 않은 감청의 금지 (CMA에서 규정),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경찰의 접근 권한, 경찰의 복호화 권한, 관련된 사람의 협조 의무 (CPC에서 규정), 대화, 문서 등의 감청 및 기밀성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공 (ETA에서 규정)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 감청은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전기통신서비스의 감청이 아니라, 컴퓨터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감시를 의미한다. 즉, 전기통신서비스 감청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협조설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 2 절 국외 통신비밀자료 보관 제도 시행 현황

1. 유럽

가. Directive 2006/24/EC의 적용 범위

EU(European Union)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사업자의 통신 비밀자료 보관(DR, Data Retention)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Directive 2006/24/EC 을 제정하였다. Directive 2006/24/EC은 2002년에 제정된 2002/58/EC를 개정한 것이다.

Directive 2006/24/EC은 중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확보를 위하여, 통신사업자에 의해 생성 및 가공된 특정 데이터의 보관에 관하여 회원국 내 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Directive 2006/24/EC에서는 공공이 이용 가능한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공공 통신 네트워크의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가공되는 데이터의 보관과 관련하여, 통신서비스 별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 보관기간 및 보안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Directive 2006/24/EC은 합법적인 대상자의 트래픽 및 위치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가입자 및 등록된 이용자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관련 데이터에는 적용되나, 통신의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U의 회원국들은 Directive 2006/24/EC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보관되어야 할 데이터의 범위에는, 성공하지 못한 호 시도에 대한 데이터는 포함되나, 연결되지 못한 호에 대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 성공하지 못한 호 시도라 함은, 전화 통화가 성공적으로 연결은 되었으나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네트워크 관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나.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 규정

Directive 2006/24/EC에서는 회원국의 통신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서비스 및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 서비스의 종류
 -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 인터넷접속, 이메일 및 인터넷전화
- 데이터의 종류
 - 통신 발신지의 추적 및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 통신 착신지의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 통신 날짜, 시간 및 기간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 통신종류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 이용자의 통신 장비 또는 장비의 목적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 모바일 통신 장비의 위치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그러나 통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는 보관될 필요가 없다.

<표 1> 통신비밀 데이터 보관에 관한 EU의 규정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인터넷접속, 이메일 및 인터넷전화
통신 발신지의 추적 및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신 전화번호 • 가입자 또는 등록된 이용자의 이름 및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된 user ID • 공중 전화망으로 들어오는 통신에 할당된 user ID와 전화번호 • 통신시 IP 주소, user ID 또는 전화번호가 할당된 가입자 또는 등록된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통신 착신지의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얼 된 전화번호, 부가서비스(호 전달, 호 전환)가 포함된 경우 해당 호가 라우팅 된 번호 • 가입자 또는 등록된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전화 호의 의도된 수신자의 user ID 또는 전화번호 • 가입자 또는 등록된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의도된 통신 수신자의 user ID
통신 날짜, 시간 및 기간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 시작과 종료 날짜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d on a certain time zone) 인터넷접속서비스 로그인/로그오프 날짜와 시간,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업자가 통신에 할당한 동적 또는 고정 IP주소, 가입자 또는 등록된 이용자의 user ID • (based on a certain time zone) 이메일 또는 인터넷전화서비스 로그인/로그오프 날짜와 시간
통신종류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된 전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 장비 또는 장비의 목적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전화: 송수신 전화번호 • 이동전화: 송수신 전화번호/송신 및 수신 측의 IMSI 및 IMEI • 선불 익명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처음 작동 날짜와 시간, 서비스가 작동된 location label (Cell 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얼 업 접속에서의 송신 전화번호 • 통신의 DSL (Digital subscriber line) 또는 발신자의 다른 종단
모바일 통신 장비의 위치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시작시의 location label (Cell ID) • 통신 데이터가 확보되는 기간 동안 location labels(Cell ID)를 참조한 셀의 지리적 위치를 식별하는 데이터 	

※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다. 데이터 보관 기간

회원국들은 위에서 규정된 데이터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회원 국가는 전기통신서비스나 공중통신 네트워크 제공업자로 하여금 적어도 다음의 보안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 획득된 데이터는 네트워크상의 데이터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동일한 보안 및 보호를 받아야 함
- 데이터는 우발적이거나 불법적인 훼손, 우발적인 손실이나 변경, 불법적인 저장, 처리, 접근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대책이 적용되어야 함
- 데이터는 특별히 승인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대책이 적용되어야 함
-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어야 함
- 회원국가는 데이터 보안에 관한 위 항목들을 준수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고, 1개 이상의 public authorities을 정하여 이러한 조항의 적용을 모니터링 하

도록 해야 함

마. 통계

생성 및 가공된 데이터의 보관에 관한 통계는 매년 EC(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해야 한다. 이 통계는 적용된 각 국가의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보관된 날짜와 수사기관이 데이터의 전달을 요청한 날짜와의 기간에 대한 통계, 데이터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한 통계를 포함해야 하며, 개인적인 데이터에 대한 통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바. Directive 2006/24/EC의 적용

EU의 회원국들은 Directive 2006/24/EC 제정일을 기준으로 18개월 후인 2007년 9월까지 이 Directive를 각 국가의 법에 반영하도록 요구되었다. 다만, 인터넷접속, 이메일 및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는 이 Directive의 적용을 18개월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이 연장 규정을 활용하였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체코,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Directive 제정 시, 위 IP 서비스에 대한 Directive의 적용을 18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의 국가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고 IP 서비스들에 대한 Directive의 적용을 연장할 의사를 밝혔다. Directive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data retention을 시행하는 EU의 회원 국가는 3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회원국들은 Directive 2006/24/EC의 시행과 관련하여 데이터 보관 기간 등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회원국들은 데이터를 최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EC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4년간, 아일랜드의 경우 3년간 데이터를 보관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회원국들은 Directive 2006/24/EC에서 정하는 목적 (범죄의 발견, 조사 및 기소 등)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civil copyright과 관련된 경우에도 보관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Directive에서 정한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덴마크의 법안에서는 Directive에서 ISP에게 요구하는 로그인 및 로그아웃에 대한 상세 정보보다 모든 인터넷 데이터 패킷의 출처, 시간 및 도착지에 대한

로그 정보를 ISP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U.S.Code Title 18 § 2703 "Required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 등에서 통신서비스 관련 데이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 통신 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remote computing service) 제공업자는 서비스 가입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정부기관에게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이름 (name)
- 주소 (address)
- 로컬 및 장거리 전화 연결 기록, 또는 세션 시각 및 시간 (local and long distance telephone connection records, or records of session times and durations)
- 서비스 기간 및 이용된 서비스의 종류 (length of service (including start date) and types of service utilized)
- 전화 또는 기기의 번호, 또는 다른 가입자 번호 또는 신원 (telephone or instrument number or other subscriber number or identity, including any temporarily assigned network address)
- 그러한 서비스의 결제 방법 및 출처 (means and source of payment for such service (including any credit card or bank account number))

정부기관은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기 위하여 법원 등에서 발부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2009년 초, 아동의 이용 및 착취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의 일환으로 통신데이터 보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시 할당된 네트워크 주소의 이용자 신원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기타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사업자 또는 어떤 주체가 정보의 검색, 정리, 가공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여 보전해야 한다. 정부기관이 보전하는 금액은 정부기관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주체 간의 합의를 통하여 정해지

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 제공에 대한 명령을 발생한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이름, 주소, 착발신 전화번호 등의 telephone toll call 관련 기록을 의미하는 telephone toll records나 telephone listings와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communications common carrier)가 보유하는 기록 및 기타 정보의 경우는 비용 보전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된다.

제 3 절 통신제한조치 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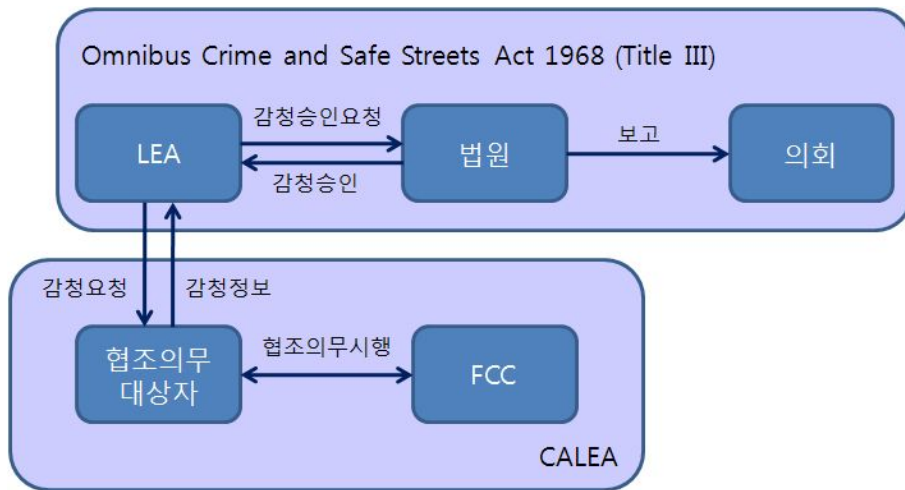
1. 국외 사례

가. 미국

1) 감청 집행 구조

미국에서의 통신서비스 감청은 Omnibus Crime and Safe Streets Act 1968 와 FISA(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1978, 대외정보감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수사 목적의 감청은 Omnibus Crime and Safe Streets Act 1968에 근거하여, 안보 목적의 감청은 FISA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Omnibus Crime and Safe Streets Act 1968의 Title III (일명 Title III) 는 원자력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수사 관련 혐의자에 대한 통신감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법률에 근거한 수사 목적의 감청 집행 구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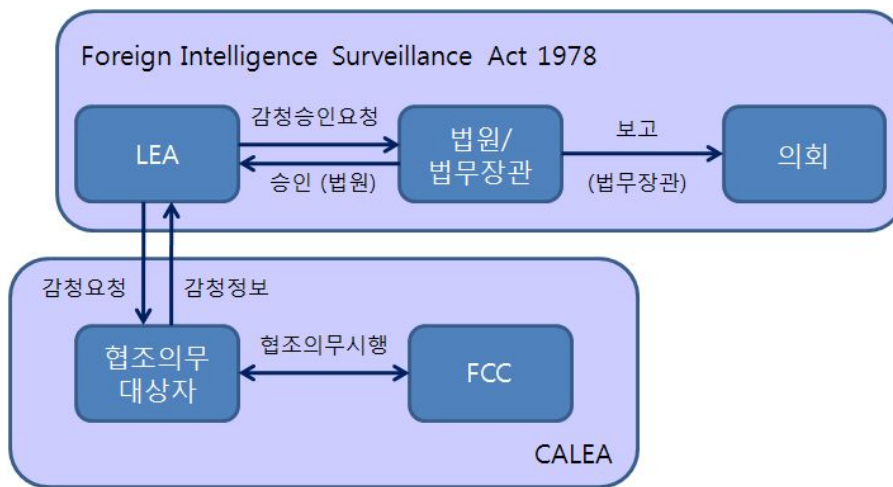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에서의 수사 목적의 감청 집행 구조

수사기관의 감청 승인 요청에 대하여, 관할법원의 판사가 허가를 낼 수 있다. 연방법원 행정처장은 매년 4월 의회에 전년도 감청신청·허가건수 및 감청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하여 보고한다.

LEA(Law Enforcement Agency, 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는 CALEA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CALEA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지원에 필요한 모든 기술조건 및 설비용량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외정보감시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세력, 그와 연계된 미국인 및 미국 기관·단체에 대한 감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근거한 감청 집행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미국에서의 안보 목적의 감청 집행 구조

수사기관의 감청 승인 요청에 대하여, 법원의 승인을 거쳐 미국인 및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이메일과 휴대폰 등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매년 4월 의회에 감청신청·허가건수 등을 보고하고 정보위원회에 반기별 집행현황을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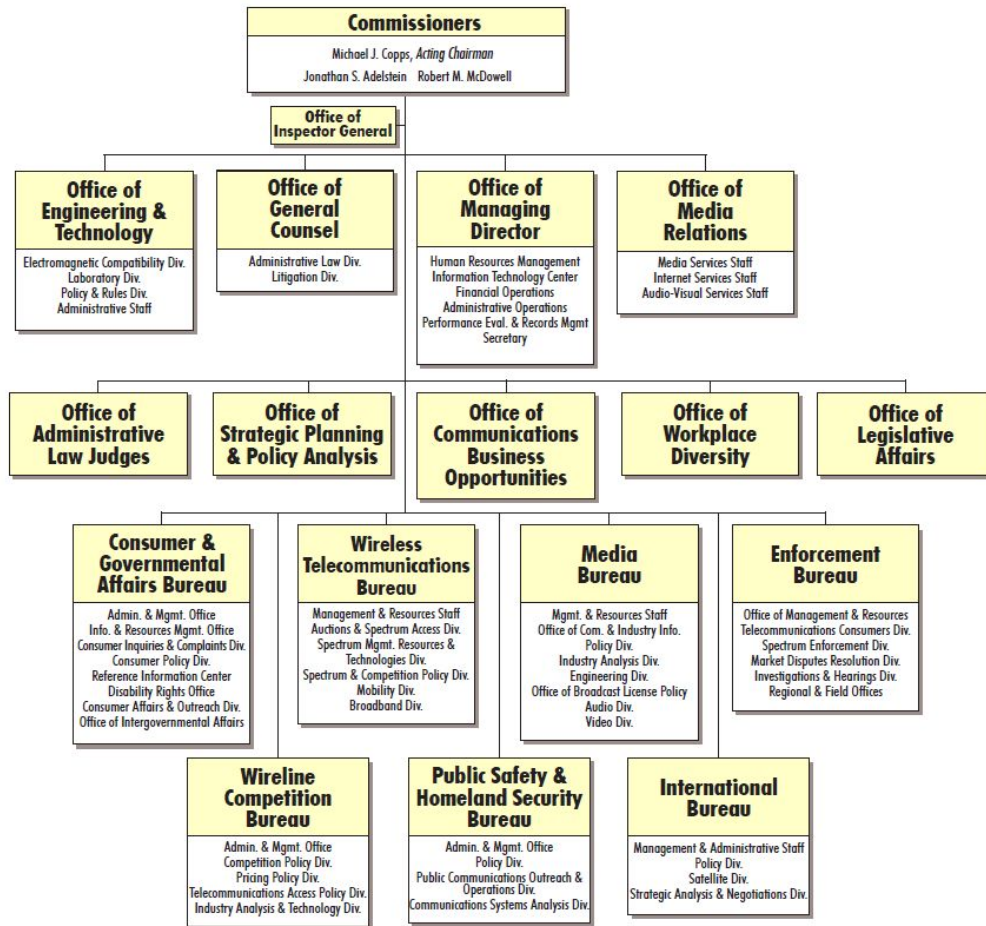
2) FCC의 역할 및 구조

1934년에 설립된 FCC는 무선 및 유선에 의한 주통신(州通信)과 외국통신을 규제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이다. FCC는 연방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따라 유선과 무선을 통한 통신사업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규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방송에 관한 규칙 제정, 각주의 통신 및 국제통신을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CC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

회로서,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여 결정하며, 산하에 법적 성격에 따라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미국 내 모든 주(州)의 통신 및 국제통신을 관장하며, 각 주의 공익위원회는 주 내 통신을 감독하는데, 일반적인 행정 권한뿐만 아니라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권, 면허 갱신의 가부를 재정하는 준사법권을 가지며, 방송계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인 규제를 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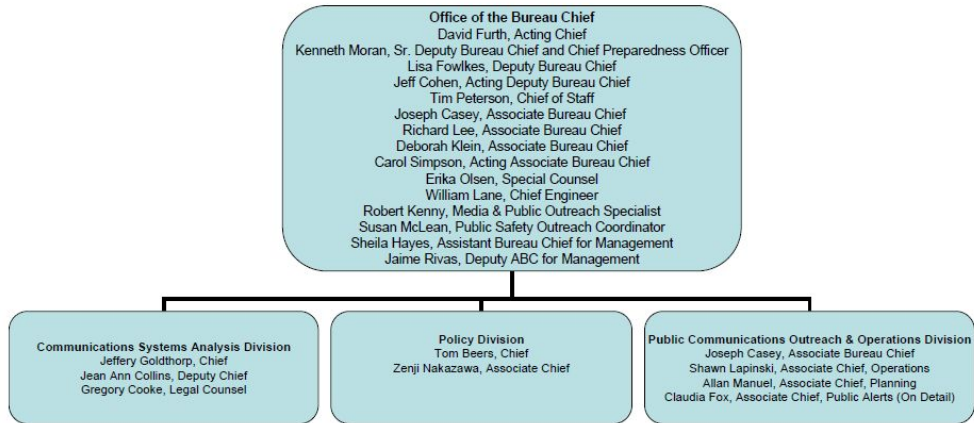
CALEA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FCC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ALEA 제102조에 따라 CALEA 준수 의무를 가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CALEA 준수 의무를 가지는 전기통신사업자에의 해당 여부 해석 및 법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한 전기통신사업자에서의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CALEA 제10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설비 또는 서비스가 지원 능력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CALEA 제105조에 따른 시스템 보안과 무결성 확보를 위한 규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ALEA 제107에 따라 감청 집행을 위한 산업표준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 CALEA 시행을 위한 기술 요구사항이나 표준 수립을 요청하고, 통신사업자가 준수기일 연장 신청 시, 준수기간 중 합리적인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될 경우 연장을 허용하고 그 기한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CALEA 제109조에 따라,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거나 배치된 장비, 설비 또는 서비스가 지원능력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도 가진다.

FCC는 기능에 따라 7개의 Bureaus와 10개의 Staff Offices로 구성된다.



<그림 3> FCC의 조직 구성도

Bureaus는 허가 신청 처리 및 기타 filing, 불만 분석, 조사 수행, 규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청문회(hearings)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Offices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중, PSHSB(Public Safety & Homeland Security Bureau)는 통신서비스 감청을 포함하여, 공공안전, 국가보안, 긴급 관리 및 준비, 재난 관리 및 기타 관련 이슈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FCC PSHSB는 3개의 Division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Policy Division에서 CALEA 집행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 FCC PSHSB 조직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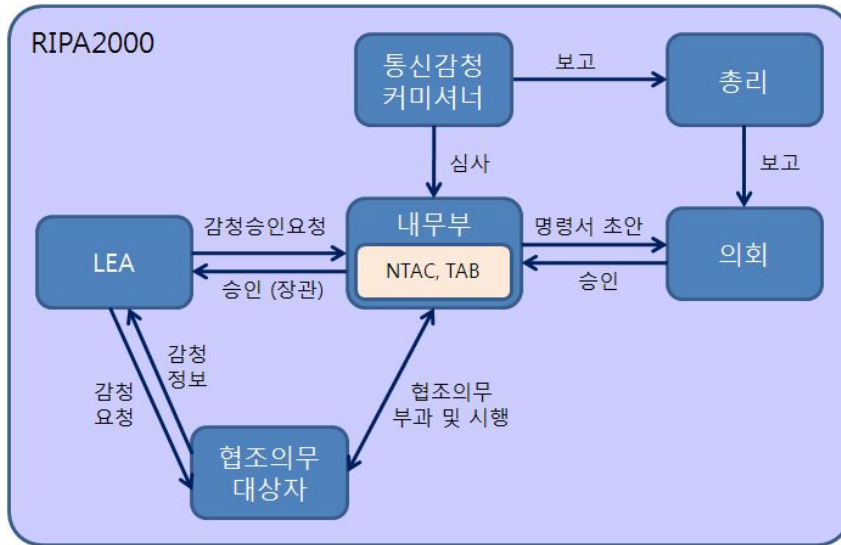
2006년 말 PSHSB 설립 초기에 약 90명의 직원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FCC 내에서 가장 작은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 Policy Division 내에 CALEA Team 이 운영되고 있으며, Senior Attorney, Attorney Advisor, Deputy Division Chief 등 약 2~4명의 인력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PSHSB의 관심이 CALEA 보다는 E911 등 타 이슈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영국

1) 감청 집행 구조

영국에서의 통신서비스 감청은 수사권규율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대범죄 예방 및 탐지를 목적으로 범죄 혐의자에 대한 통신감청, 국가안보 및 경제적 번영 위해활동 혐의자 등에 대한 통신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의 감청 집행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영국의 감청 집행 구조

범죄 혐의자 및 국가안보 혐의자 등에 대한 통신감청은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통신감청 커미셔너는 관계기관의 관련 자료를 점검, 감청허가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는 통신감청 커미셔너가 작성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통신사업자는 소속장관이 발부한 통지서에 기술된 모든 감청 협조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고의로 협조의무 불이행 시 2년 이하 금고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감청 관련 조직의 역할

□ RIPA2000 시행을 위한 내무부 역할

내무부 장관은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통신의 감청, 통신감청 협조 제공 요청 등을 수행하도록 영장에 지정된 자에게 허가하거나 명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내무부 장관은 영장 집행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명령이나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통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내무부 장관은 감청영장과 관련된 협조 제공 요건이 부과 및 준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우편서비스 또는 공공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를 계획하는 자에게 명령으로 합당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를 부과

하는 장관의 권한은 협조의무자에게 통지서에 명시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에 따라 통지함으로써 실행된다. 의회에 제출된 명령서 초안이 양원의 결의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명령을 발할 수 없다. 내무부 장관은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치가 이행되기 위하여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내무부 장관은 명령에 의하여 임명한 자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내무부 장관은 협조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관은 이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준수할 목적으로 의회에 의하여 제공되는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내무부 장관은 감청자료 및 통신자료 등과 관련하여 공개 및 사용되는 자의 수, 한도, 사본의 수 등에 관한 감청 자료의 일반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작성된 감청자료나 통신자료의 사본이 보관되는 동안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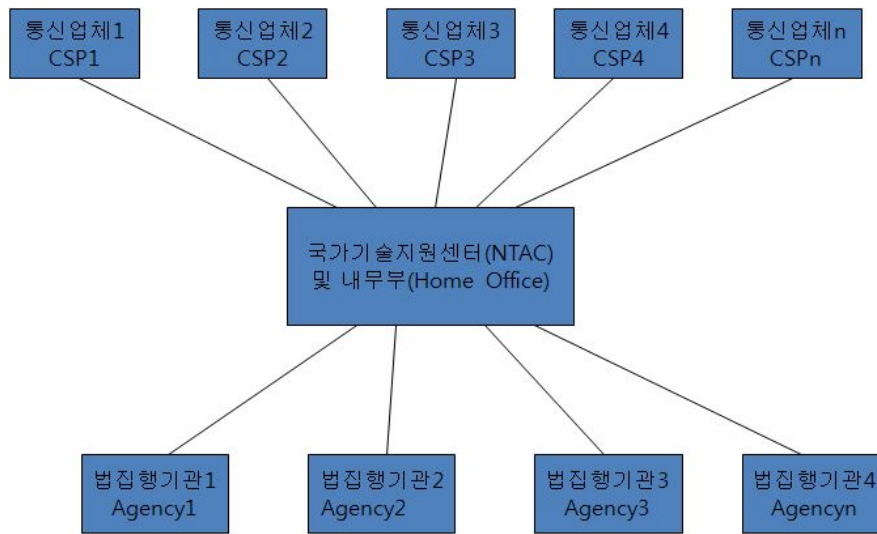
□ RIPA2000 시행을 위한 TAB의 역할

제12조 제2항의 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TAB(Technical Advisory Board, 기술자문위원회)에 조회할 수 있으며, TAB는 통지서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여 조회를 한 자에게 통보하고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청협조관련 통지서를 받은 통신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에 기술적 요건 및 재정문제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를 거쳐 통지서에 기재된 협조조치를 이행한다. 그러나 실제로 제12조 통지서가 기술자문위원회에 회부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무부 장관은 제12조에 의거하여 명령을 발하기 전에 의무 부담자, TAB, 의무 부담자의 대표자, 관련 법적 기능을 가진 자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TAB는 내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임명된 자들로 구성된다. TAB 위원은 의무가 부과된 자, 감청영장 신청권한이 있는 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들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장관은 제13조에 따른 명령서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양원의 결의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발할 수 없다.

□ RIPA2000 시행을 위한 NTAC의 역할

다수의 통신사업자와 정보수사기관 간 효율적 감청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 감청업무 중앙통제 및 조율기관으로서 국가기술 지원센터(NTAC, 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Centre)가 기술적 이슈를 담당한다.



<그림 6> 영국 NTAC와 내무부의 역할

내무부와 국가기술지원센터는 서비스, 보안기능, 잠재적 사용자, 합법감청 구조와 법 집행기관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한다.

NTAC는 수사기관 및 정보서비스 등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감청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와 같은 보안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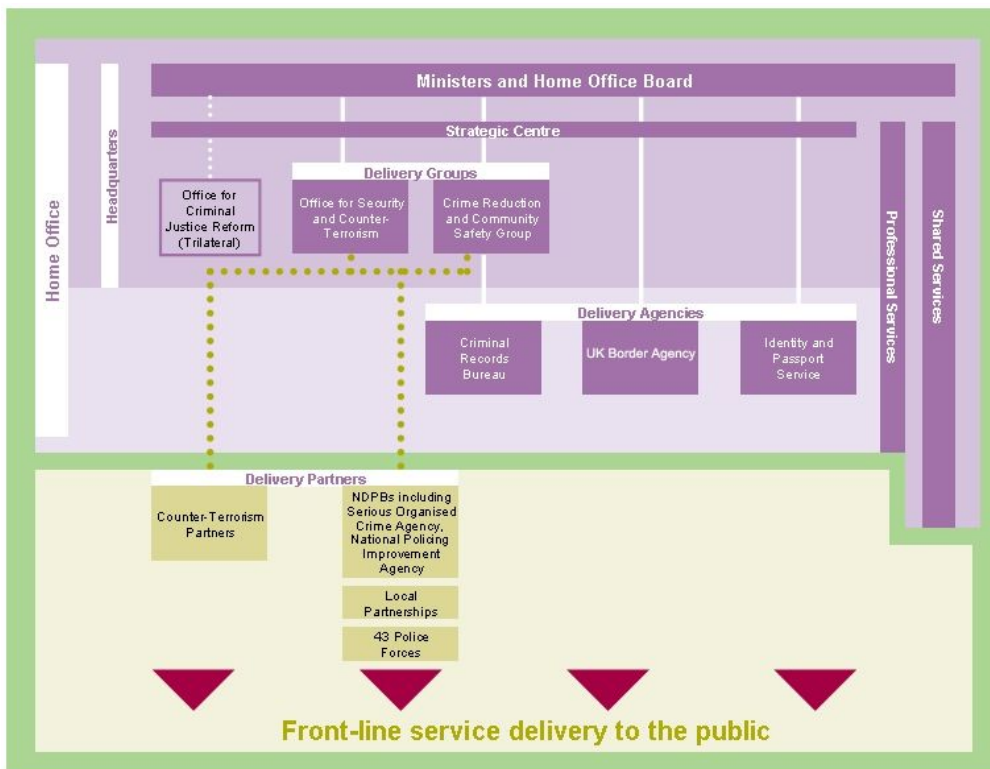
□ RIPA2000 시행을 위한 커미셔너의 역할

내무부 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명령을 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통신감청커미셔너와 협의해야 한다. 이 때, 통신감청커미셔너는 총리에 의하여 임명된다. 통신감청커미셔너는 제1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심사해야 하며, 매년

말 커미셔너의 기능 수행에 관하여 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 각 기관 및 조직 운영 현황

영국 내무부 내에서 보안 및 감청과 관련된 사안은 Office for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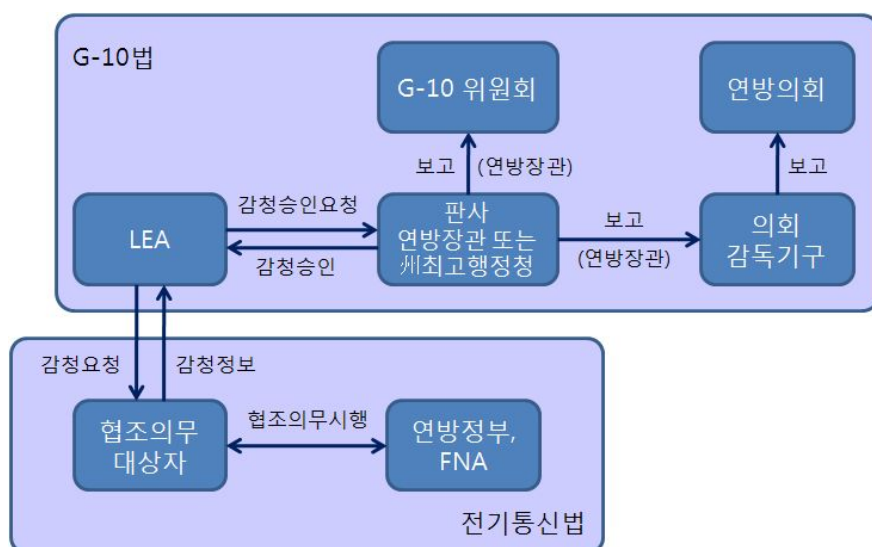
<그림 7> 영국 내무부 조직 구조

감청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요구사항과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는 TAB 과 감청업무 중앙통제 및 조율기관으로서 기술적 이슈를 담당하는 NTAC는 Office for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에 속한다. TAB은 내무부 장관에 의하여 임명된 중립적 입장의 의장, 통신업계 인사 6명, 법 집행기관 인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통신감청커미셔너는 1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내무부장관은 커미셔너와 협의하여 재무부의 승인을 전제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 독일

1) 감청 집행 구조

독일에서의 통신서비스 감청은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1968)", 일명 G-10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독일에서는 G-10법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 제100a조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혐의자, 안보사범 및 독일에 대한 무력공격 위험, 국제범죄 등에 대한 통신 감청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감청 집행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독일의 감청 집행 구조

형사소송법 제100a조에 규정된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감청은 관할법원 판사에 의해, 안보사범 및 독일에 대한 무력공격 위험, 국제범죄 등에 대한 감청은 연방장관 또는 州 최고행정청에 의해 감청처분이 이루어진다. 연방장관은 매 반기 의회 감독기구에 감청 현황을 보고하고, 동 감독기구는 감청집행/방법/범위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연방장관은 집행 전 G-10 위원회에 처분내용을 보고하며, 위원회가 거부할 경우 감청은 중단된다.

전기통신사업법(Telekommunikationsgesetz 1996)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감청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설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조의무 불이행 시 15,000유로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전기통신감청령(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sverordnung 2002)에서는 감청 집행과 관련, 통신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적 설비의 구성을 위한 기술조건과 지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감청 관련 조직의 역할

연방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연방참의원(German Bundesrat)의 동의 아래 감청조치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적 요구사항, 인적/조직적 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연방장관은 매 반기 의회 감독기구에 감청현황을 보고하고, 동 감독기구는 감청집행/방법/범위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연방장관은 매월 자신이 처분한 제한조치에 대하여 그 집행을 하기 전에 G-10 위원회에 처분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가 거부할 경우 감청은 중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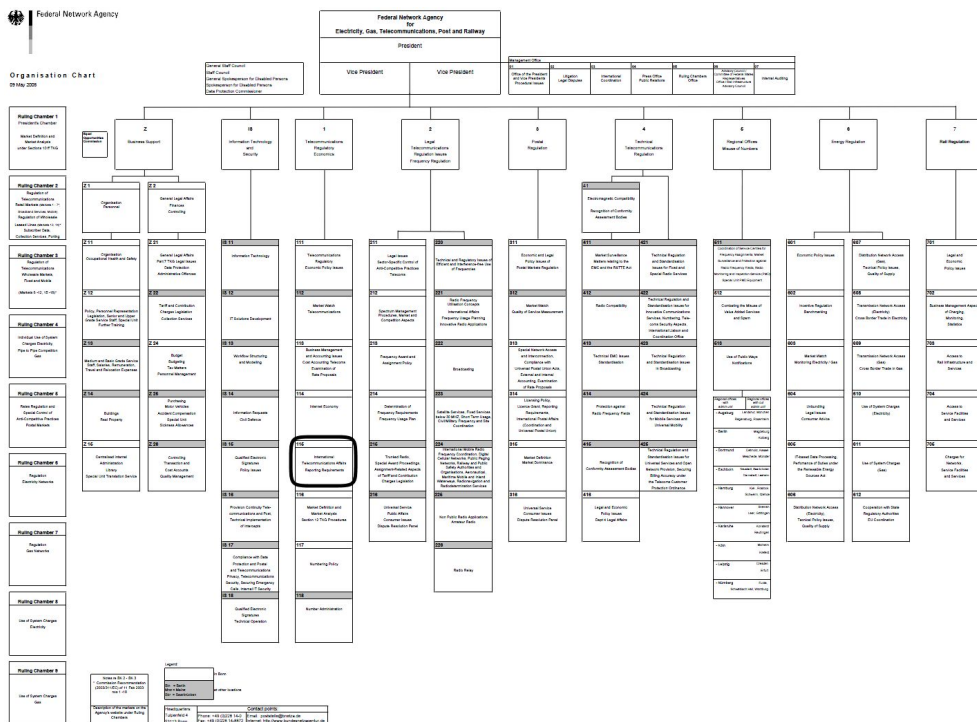
G-10 위원회는 판사의 자격을 가지는 위원장과 3명의 위원, 그리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질의할 권한을 가지는 4명의 대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원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 G-10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되며, 직권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제한조치의 타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하여 판단한다.

FNA(Federal Network Agency)는 해당기관과의 협의와 협회 및 생산자의 참여 아래 마련될 기술지침이 감청대상 전기통신을 포괄하고 처분권한기관으로의 정보전달 접속지점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한다. 이 때, 기술지침은 FNA에 의하여 관보를 통하여 공고되어야 한다. FNA는 감청조치의 구현을 위한 기술적 설비가 기술지침의 법적,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데, 감청조치의 구현을 위한 기술적 설비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이러한 설비가 특정 전기통신기기와의 관계에서 시행령 및 기술지침의 법적,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FNA에 요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설비 운영자가 이행된 감청조치에 대한 연간 통계를 작성하여 FNA에게 제출하며, FNA는 이를

요약하여 매년 그 결과를 관보에 공고한다. 기타, FNA는 전기통신설비 운영자가 협조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적 이슈 등에 대하여 협의 및 관리한다. 즉, 전기통신이 처분권한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있고, 처분서에 해당 외국 전화번호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유형의 처분을 구현하는 작업은 협조 의무자가 FNA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공공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영자는 설비 운용 개시 후 지체 없이 FNA에 대책을 강구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협조 의무자는 매 분기 초 작성된 로그기록데이터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여, 매 분기 말까지 검사 결과의 사본을 FNA에 제출해야 한다.

FNA는 9개의 commiss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서비스 감청 관련 사항은 IS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curity) Commission 내 8개의 하위 조직 중 IS 16 (Provision Continuity Telecommunications and Post, Technical Implementation of Intercepts)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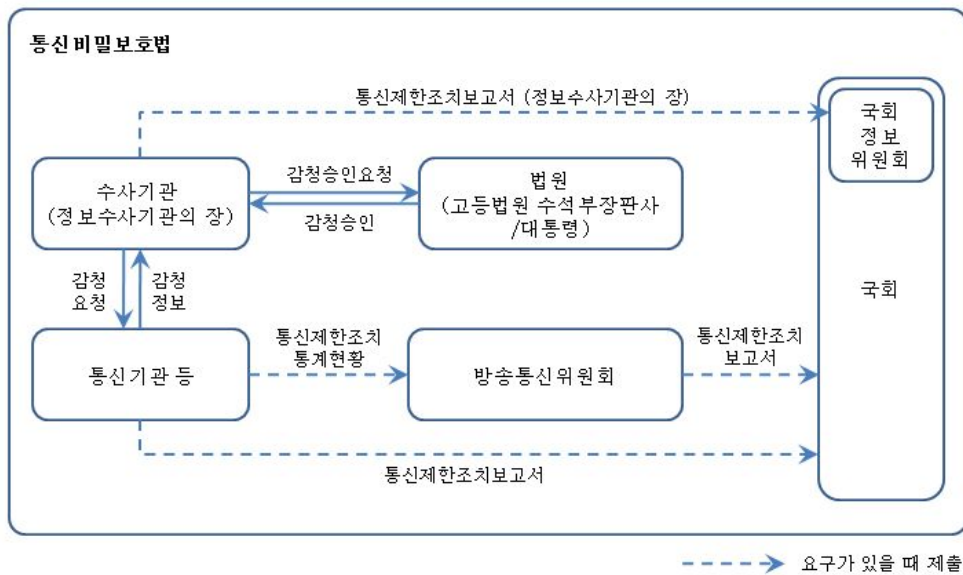


<그림 9> 독일 Federal Network Agency 조직 구조도

2. 국내 추진체계 검토

가. 현행 추진 체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시행을 위한 승인, 감청 시행 및 결과 보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림 10> 현행 통신제한조치 시행 및 보고 절차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는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와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위하여 검사(검찰관 포함)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 이용자가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통하여, 외국, 외국의 기관/단체 및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집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통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신청한 수사기관이 집행하며, 이 때 통신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조사 등을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

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기관의 장에게 반기마다 통계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추진체계 검토

1) 통비법 개정안에서의 위임 사항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협조설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률로 위임하거나, 제도 시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협조의무 대상 범위 규정: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청협조설비 구비 의무를 가짐
- 기능 요구사항 정의: 감청협조설비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해야 함
- 비용보전 규정: 감청협조설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보호조치: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청협조설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 기록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규정: 전기통신사업자는 1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위치정보를 제외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함
- 기타: 위에서 기술한 5가지 사항 외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협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와 관련하여 통비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함
 -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과태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이 부과 및 징수함

2)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검토

위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의 위임 사항들은 대통령령에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부분과 방송통신위원회(장)이 통비법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하는 부분이 있다. 이들 항목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로 규정 및 판단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협조 의무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비법 시행령 상에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가 규정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해석, 의무 예외 대상자의 해석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능 요구사항의 정의와 관련하여, 통비법 시행령 상에 감청협조설비의 기능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감청협조설비의 기능을 정의하는 표준의 제정 및 적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호조치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설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 기록의 관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록 통비법 시행령 상에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관련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에의 반영, 협조의무를 가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하여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령을 통하여 규정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 명령과 관련하여, 명령을 발할지의 여부와 명령 준수에 대한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지의 여부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정할 수 있다.

과태료 관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은 시행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액 결정, 기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기타 역할 검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른 위임 항목 중에서, 비용보전에 대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법무부 등의 다른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청협조설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금액의 결정, 비용 신청 및 보전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시행령을 통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 법무부 등 해당 국가기관은 위의 시행령을 근거로 비용 보전 여부 결정, 비용 산정, 비용 신청 접수 및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 2 장

통신제한조치 제도 시행 방안 연구

제 2 장 통신제한조치 제도 시행 방안 연구

제 1 절 통신제한조치 적용 대상 선정 방안

1. 배경

통비법 개정안 제15조의2 제2항에서는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한 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

<표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15조의2제2항

법률(현행)
제15조의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②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개정안)
제15조의2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협조의무) ②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와,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할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가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 부과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이슈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의2제4항에 감청협조설비 구축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는 비용 측면에서 통신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가 넓은 것이 수사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통신서비스 감청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외국 사례

가. 미국

1) 협조설비 구축의무 부과 대상

미국의 경우 다음의 전기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s carrier)에게,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비, 설비 또는 서비스가 감청 수행을 위한 능력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common carrier로서 유선 또는 전기통신의 송신 및 교환에 관여하는 개인 및 단체”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의 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 상업용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유선 및 전기통신의 교환 및 전송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며, 연방통신위원회가 i) 지역 전화 교환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ii)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이 공공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능력요구사항 제공을 위한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 정보 서비스(IS, information service)¹⁾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
- 사설 통신망이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호연결을 위하여, 통신의 전송 또는 교환을 지원하는 장비, 설비 또는 서비스
- 연방통신위원회가 법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규정에 의거 제외된 전기통신사업자

2) 의무부과 대상의 해석

FCC는 1999년 8월 31일 “Second Report & Order(FCC 99-229)”를 발표하여 CALEA에서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정의를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 해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common carriers로 분류

1) 정보서비스란,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획득, 저장, 변환, 처리, 검색, 활용 또는 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1) 고객이 정보저장설비로부터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정보저장설비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전자출판 및 3) 전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된 주체를 모두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해석하였다.

- Local exchange carriers
- Interexchange carriers
- Competitive access providers
- Stellite-based service providers
- Cable operators

이 밖에, 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제공업자, Reseller(재판매통신사업자) 및 Calling features 제공업자가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CMRS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다른 서비스와 상호 접속되며 공중이나 상당히 광범위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Reseller는 기본적으로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지만, 대부분의 PBX provider와 aggregator 등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따라 일부 reseller는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Reseller는 국내 별정통신사업자에 해당되며, 협조의무를 가지지 않는 호집중사업자(aggregator)는 별정2호에, PBX provider는 별정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Calling features는 우리나라의 전화부가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비스 종류에는 call forwarding, call waiting, three-way calling 등이 있다.

그러나 PMRS(private mobile radio service) operator, 공중전화서비스 제공업자, 정보서비스 제공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보서비스 제공업자의 경우, 정보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전기통신 시스템과 별도로 IS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common carrier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설비는 협조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기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는 협조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FCC는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정성의 위험을 고려

하여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3) 의무부과 대상의 확대

FCC는 2005년 9월, 설비기반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자와 상호연동 VoIP 서비스제공업자가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진다고 공표하였다. 위 Order 발표 이전에는, 인터넷접속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정보서비스로서 CALEA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4) 종합

위에서 서술한 바에 따라, 미국에서의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 부과 대상 통신 서비스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미국 감청적용 사업자의 국내 사업자와의 대응

	사업자 종류	설명	서비스 종류	국내 사업자
부과	CMRS	상업용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룰러 서비스 -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 - 공중망 접속 SMR - 위성 이동 통신 - push-to-talk dispatch 서비스 - (무선호출, Business Radio, 번개 지도용센서(LMS), air-to-ground service, 공중해안 무선국(CMR) 등)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할” 제공업자
	Reseller	재판매 통신사업자	-	별정통신사업자
		(예외) PBX provider, aggregator 등 보유 설비에 따라 적용 받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X 제공 서비스 - 호집중 서비스 -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Aggregator (호집중 사업자): 별정2호 PBX provider: 별정3호
Calling features provider	호 부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Calling features such as - call forwarding - call waiting - 3-way calling - speed dialing 	“전화부가서비스” 제공업자	

			- redirection portion of voice mail 등	
	Facilities-based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설비기반 광대역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모든 종류의 광대역 인터넷접속서비스 - 유선인터넷접속서비스(DSL 등) - 케이블 모뎀 인터넷접속서비스 - 위성 인터넷접속서비스 - 무선 광대역 인터넷접속서비스 - Fixed wireless 인터넷접속서비스 - 전력선을 통한 인터넷접속서비스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및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제공업자
	Interconnected VoIP service provider	PSTN 연동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TN과 착발신이 가능한 모든 광대역 인터넷전화서비스 - 인터넷전화사업자 및 CableTV 사업자 해당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업자
미부 과	PMRS	자가용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육상이동통신 - 제한된 범위의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 - 간이무선국 - 선박국 - 항공기국 - 비상국 	무선국 ²⁾
	Pay telephone providers	공중전화	- 공중전화서비스	(시내전화사업자가 제공)
	Information service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전화서비스 (PSTN 연동 VoIP 서비스 제외) - 이메일서비스, on-line 서비스 등 	부가통신역무

※ Sour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97-356, 1997.10.10
 Second Report and Order, FCC99-229, 1999.8.31
 한국전파진흥협회

2) 무선국은 물적요소인 무선설비와 인적요소인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사람의 총체를 말하며, 일반무선국, 간이무선국, 아마추어국, 선박국 등이 있다.

나. 기타 국가

1)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공공전기통신네트워크 및 공공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감청 능력의 구현 및 수사기관에로 정보 전달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는 서비스의 종류는 이메일 메시지, 인터넷 전화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장관은 내무장관 및 법무장관과 합의하여 특별한 상황 하에서 감청협조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2) 독일

독일의 경우, 전기통신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공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전기통신 감청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공공전기통신서비스는 유선 네트워크, GSM, UMTS 기반 서비스 뿐 아니라, e-mail 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DSL, WLAN 등) 및 VoIP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감청협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액세스 네트워크끼리 상호연결하며, 직접적인 전기통신 연결이 없는 전기통신 네트워크 (interconnection networks without user-access)
- 인터넷으로의 연결에 이용되는 통신망연결점 (IAP)
- 가입자의 직접적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구성된 전송로
- 전적으로 방송의 배포, 기타 공공을 위한 특정서비스로서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의 조회 또는 관측자료, 비개인 정보, 긴급통화 또는 해상, 항공 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보의 전달을 제공하는 경우
- 1,000명 이상의 가입자와 접속이 되지 않는 시스템

3) 영국

영국의 경우, 소속장관은 공공우편서비스 또는 공공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를 계획하는 자에게 감청 협조 제공 요건이 부과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명령으로 합당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는 서비스

의 종류는 이메일 메시지, 인터넷 전화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 감청협조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전기통신 담당 장관이 전기통신네트워크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로 하여금 장관의 명령 하에 감청에 필요한 물리적 운용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3. 고려사항

감청협조설비 구축의무 부과 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법적 실효성, 감청협조설비 구축비용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통신서비스 공공성은 기술적, 제도적, 지리적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가 특정 부분에 제한되지 않으며 공공이 이용 가능한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예로, 사설 네트워크 내부에서의 통신은 공공이 이용 가능한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작을수록,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 부과에 대한 당위성이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설 네트워크 내부의 통신에 대해서는 감청협조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나, 공중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지점(게이트웨이 등)은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사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 중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별정3호사업자가 제공하는 구내통신, 회선설비임대를 통하여 지사 및 본사 간 사설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접속서비스 중 하나인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사설 네트워크 내부 이용자 간 통신(PC방에서의 내부 이용자 간 통신) 등이 있을 수 있다.

나. 법적 실효성

전기통신서비스의 감청에 대한 법적 실효성이 충분한 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서비스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규모
- 해당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통신의 내용 및 수준이 통신기술 및 통신시장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감청에 대한 법적 실효성이 충분한지의 여부
- 음성 통화 서비스의 경우, 타 네트워크와의 연동 가능 (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와의 착발신 가능) 여부
-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감청 없이도 지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감청이 가능할 경우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발신자의 신원 확인 가능성 여부 등, 기술적 측면의 제한성 여부
- 기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감청에 대한 법적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

다. 감청협조설비 구축비용

통신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감청협조설비 구축에 대한 기술적 난이도, 기존 장비의 변경 정도, 신규 장비의 추가 정도가 달라 감청협조설비 구축비용이 다르다. 국가가 감청협조설비 구축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가 통신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 부과 대상 규정 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4. 검토

가. 국내 통신역무의 분류

1)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 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의 내용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이 때,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2009년 6월 기준, 국내에는 총 142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통신역무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표 4> 국내 전기통신역무 분류

기간역무	세부서비스
전송역무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공중전화서비스, 전화번호안내서비스, 전화부가서비스,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구내통신서비스, 기타전송서비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선박무선통신서비스,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와이브로,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
부가통신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역무	
----	--

3) 역무별 검토

전송역무에 속하는 서비스들에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앞에 기술한 고려사항들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전송역무 협조의무 부과 여부 검토

서비스	검토 내용
일반전화 가입자접속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 단독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며, 예를 들어 시내전화통화를 위해서는 시내전화서비스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임 ○ 감청기능의 구비는 MDF 이후 구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감청기능 구비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시내/시외/ 국제전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TN 기반의 전화서비스는 현재도 감청 대상에 해당됨 ○ 공공성, 실효성,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감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공중전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용 단말기와 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발신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감청기능 구비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감청 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전화 부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 착신전환, 전화회의 등 유선전화서비스에서의 음성통화 연결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감청이 필요할 수 있음
인터넷가입자 접속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감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검토되는 것이 필요함
인터넷가입자 접속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기반서비스로서,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감청을 통하여 인터넷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감청을 지원할 수 있음 ○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효과적인 감청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협조의무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청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감청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감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인터넷전용 회선서비스	○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의 본사와 지사간, PC방 등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생각할 때 감청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인터넷백본 접속서비스	○ ISP간 인터넷호의 교환이나, 타 ISP의 호를 제 3 ISP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감청 기능 구비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인터넷 전화서비스	○ 통비법 개정안에서의 전화서비스에 포함되어 협조의무를 가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구내통신 서비스	○ 구내통신서비스는 사설 서비스에 해당하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법적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감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 전송서비스	○ 감청 초기에는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한 검토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속하는 서비스들에 감청협조설비 구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앞에 기술한 고려사항들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협조의무 부과 여부 검토

서비스	검토 내용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 통비법 개정안에서의 전화서비스에 포함되어 협조의무를 가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이동통신 (IMT2000)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 가입자 및 통신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무선호출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 군과 전달되는 통신 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적 실효성이 작아서 단기적으로 감청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주과수공용통신 서비스 ³⁾	○ 주과수공용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공성과 관련한 서비스 이용자 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적 실효성이 작아서 단기적으로 감청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무선데이터통신	○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하여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 단기적으로 감청의 법적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선박무선통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무선통신서비스는 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법적 실효성과 서비스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감청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위성휴대통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공공성과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법적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감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위성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공공성과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법적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감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부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음성통화 연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부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감청 기능의 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기술 난이도 및 비용 측면에서의 추가 검토가 요구됨
와이브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와이브로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 용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화서비스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와이브로 감청을 위한 기술적 난이도와 법적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감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통신서비스 제공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에 공항통신, 초고속무선인터넷, 위치기반서비스, 휴대인터넷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측됨 ○ 공항통신 및 위치기반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감청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초고속무선인터넷의 경우 현재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는 시내/시외/국제 및 기타 회선설비임대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에는 위성회선설비임대서비스 등이 있는

3) 주파수 공용 통신 시스템(trunked radio system). 다수의 이용자가 복수의 무선 채널을 일정한 제어 하에 공동 이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검찰, 한국 전력, 교통 방송 등이 300MHz 또는 800MHz대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자가 업무용 또는 사설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TRS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체 등의 업무용 TRS 서비스는 TRS 사업자들이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T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경우 임대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협조의무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선설비임대서비스는 특정한 형태의 통신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며, 회선설비 임대서비스를 이용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여러 종류의 기간통신서비스를 개인가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감청협조기능을 구비해야 할 경우, 국내 통신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해 주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PBX 제공업자와 호집중 사업자(별정3호) 등을 제외한 재판매통신사업자(Reseller)에게 CALEA 능력요구사항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비추어 볼 때, 별정1호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하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경우 임대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협조의무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이 때 의무를 가지는 주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협조의무 면제 및 유예절차

1. 배경

통비법 개정안 부칙에서는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는 통신사업자에게 의무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연장하는 절차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표 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부칙 제4조

부칙(신설안)
<p>제4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동전화사업자 : 이 법 시행 후 2년2.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 : 이 법 시행 후 4년 <p>②제1항 각 호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안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③방송통신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위의 법률 개정안 부칙에서는 협조의무 준수를 위하여, 이동전화사업자에게 2년,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제공업자의 종류에 따라 협조의무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이 다르게 부여됨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규정된 기간 안에 이를 갖추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협조의무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유예기간 연장

을 위한 절차, 유예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최대 유예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외국 사례

가. 미국

1) 유예기간 연장 규정

미국에서는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 준수일 이전에 설치 또는 설치 계획된 장비,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1회 이상 준수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인 CALEA가 1994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준수 의무를 가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기본적인 의무 준수일은 1998년 10월에 해당된다. 협조의무 준수 기한 연장의 1회 신청 시, 연장 기간은 기간 연장이 허용된 날로부터 2년을 넘지 못한다. 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대하여, FCC는 법무장관과 협의하여 당시에 가용한 기술을 적용하여 능력요건을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2) 유예기간 연장 사례

CALEA 능력요구사항 준수시점은 법률 제정 4년 이후인 1998년 10월이지만, FCC는 표준 부재 등을 고려하여 모든 해당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준수 시점이 연기되었다. 1998년 9월 11일, FCC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당초 CALEA 능력요구사항 준수시점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모든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준수기한을 2000년 6월 30일로 연장한 것이다.

2000년 4월, FCC는 통신사업자들이 CALEA 107(c)에 근거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FBI의 Flexible Deployment Program에 참여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0년 1월, FBI는 전기통신사업자의 CALEA 요구사항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Flexible Deployment Program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자발적으로 FBI에 CALEA compliance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FBI는 그 정보의 검토와 사업자와의 논의를 통하여 수립한 CALEA deployment schedule을 기반으로, 사업자의 CALEA

107조(c)에 근거한 연장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많은 통신사업자들이 준수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FCC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유무선 사업자들에게 준수기한을 2002년 6월까지 연장해 준 바 있다. 위 사례 등을 종합하면, 기존 유무선 서비스에 대한 CALEA 능력요구사항 준수를 위하여, 기한 연장을 받은 많은 사업자들이 7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FCC는 일부 VoIP 서비스 및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부여한 18개월 유예기간의 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다. 관련하여, CALEA 규정에 따라, 제103조 발효시점인 1998년 10월 25일 이후에 도입 또는 설치된 장비, 설비나 서비스는 CALEA 107(c)의 연장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FCC의 결정에 따라 Flexible Deployment program은 더 이상 패킷 기술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CALEA 107(c)에 따라 준수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는 통신사업자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세우고 있다.

나. 기타 국가

1) 네덜란드

네덜란드 통신법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전기통신 네트워크 및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업자들로 하여금 서비스 개시 시점에 감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영국

내무부 장관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통지서를 발행할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독일

감청 협조 의무 대상자는 감청협조설비 구축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인적·조직적 지침 등을 담은 시행령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하는 기술지침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규정 공고 후 1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이미 협조 의무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로써, 이러한 지침에 따라 결함 없이 구성된 기술적 설비는 지침 개정 시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3. 검토

통비법 개정안에서 이동통신사업자와 기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유예 규정을 다르게 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비법 개정안 부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이동전화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 (이동통신부가서비스)

다만, 이동통신부가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존재함에 따라 이동통신 감청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구분하여 감청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통비법 개정안 제1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가지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이동전화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로 해석할 수 있다. 통비법 개정안 부칙 제4조제2조의 시행을 위해서 전기통신사업자는 표준의 부재, 비용 문제, 시험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장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1회 신청 시 최대 연장 기간을 (예. 2년)을 규정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연장 신청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양식은 하위 규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3 절 협조의무준수 비용보전 방안 및 절차

1. 배경

통비법 개정안 제15조의2 제4항에서는 감청협조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15조의2제4항

법률(신설안)
제15조의 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④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위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비용 보전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감청협조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규정되어야 한다.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감청협조설비 구축 관련 비용, 감청협조설비 운용 관련 비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구축비용에 대한 부분을 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외국 사례

가. 미국

1) 협조설비 구축비용 보전 관련 규정

CALEA 109조에서는 199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배치된 장비,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하여 법무장관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에의 비용보전 범위에 다른 정부기관이나 비정부단체로부터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한, 199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배치된 장비,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한 변경사항의 개발을 위한 직접비용, 1995년 1월 1일 이후에 배치된 장비, 설비 또는 서비스의 지원능력요건 준수가 합리적으로 달

성될 수 없을 경우의 지원능력 제공을 위한 직접비용, 이와 같은 능력이나 용량을 사용하기 위한 담당 인원의 훈련비용, 이와 같은 능력이나 용량을 배치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장비,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적절한 추가비용을 제공하도록 법무장관이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CC는 위 조항이 능력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비용 및 기타 어려움이 심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FCC는 전기통신사업자가 (1995년 1월 1일 이후의 장비 등에 대하여) CALEA 준수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수사기관에게 감청비(intercept charge)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CALEA 준수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가입자로부터 서비스 요금을 통하여 일부 보전할 수 있다. CALEA 능력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장비, 설비 및 서비스 설치비용이 아닌, CALEA 기반 감청 솔루션을 이용하여 감청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LEA로부터의 감청비를 통하여 보전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에게 시기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소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Cost Recovery Regulations가 제정되었으며, 주로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보전 받을 비용의 범위
- 예측비용 제출 및 지불요청에서 사업자가 만족해야 하는 요구사항
- 분쟁 해결방안 등

CALEA 실행을 위해 미의회는 네트워크 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통신사업자에의 지원을 위하여 FY 2001 말까지 약 \$500M를 승인하였으며, 2004년 11월까지 이 금액 중 약 \$445M를 집행하였다.

나. 기타 국가

1) 독일

독일의 전기통신법에서는 공공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

자로 하여금 감청조치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장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해당 장비의 유지비용까지 포함한다. 실제로, 2000년 2월 15일, 켈른의 행정재판소에서 감청설비의 구성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은 전기통신설비 운영자의 부담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다만, ZuSEGE 규정에 따르면, 개별적인 감청 수행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설비 운영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당국이 내린 명령의 집수를 위한 인력 제공, 감청의 준비 및 기술적 실행을 위한 비용, 기타 발생 비용에 대하여 시간당 최대 13 유로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설비 운영자가 감청된 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용선 등, 운영자 설비 외부로의 연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국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용은 two-core connection의 경우 €153, four-core connection의 경우 €306이다. 이러한 연결의 이용에 대하여, 감청 당국은 일반(general public)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예. 운영자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내에 포함).

2) 영국

중소형 기업의 경우, 감청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감청 장비 구비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기업이 네트워크를 개방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구비한 장비를 이용하여 감청을 수행한다. 대기업의 경우 국가의 보조금을 이용하여 일부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RIPA Grant에서 감청기능 초기 구축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주나, 감청기능 갱신 비용 등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 국무대신(Secretary of State)은 10,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는 통신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감청 능력 보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감청된 정보의 수사기관으로의 전달을 위한 연결 및 감청 명령의 수행비용 등의 운용비용은 의무이행자가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의 감청 관계자에 따르면, RIPA 제14조의 의하여 운용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으나, 이 때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관련하여, 2007년 경, 영국의 감청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 국가에서 감청 장비 사용료를 포함하여 감청 집행을 위한 비용으로 일 년에 수백만 파운드가 소요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3) 호주

호주 전기통신법에서는 통신사업자, 통신서비스제공업자 및 정보수사기관 간에 감청과 관련한 비용의 배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감청능력, 특별 협조능력의 개발,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은 통신사업자 또는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 이 때, 감청능력은 통신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또는 시설의 능력을, 특별 협조능력은 정보수사기관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또는 시설의 능력을 의미한다.

통신사업자 또는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담된, 정보수사기관의 전달능력을 개발, 설치 및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은 정보수사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1997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감청능력 또는 특별협조능력의 개발, 설치 및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통신사업자 또는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감청 관계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감청설비 구축비용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며 수사기관에서 추가 요청한 기능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감청협조설비의 구축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감청의 집행을 위한 운영비용 및 감청된 정보의 전달을 위한 연결 비용 또한 프랑스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관 형태와 상관없이 인쇄된 문서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모든 문서 검색에 대하여 건당 €3.81, 문서의 복사에 페이지당 €0.08를 지불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감청과 관련하여, (암호의) 해독 및 decoding materials의 전달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실제 비용 및 근거 자료의 입증에 기반을 두어 국무총리의 예산으로 부담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법당국이 명령한 감청에 대하여, 각각의 decoding materials 전달 또는 decoding 수행에 대하여 €60.98가 할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검토

현재 통비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협조설비 구축에 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의 비용 보전은 실제 협조설비 구축비용, 법률 개정 후 국가 예산 등에 종속적일 수 있다.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등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통신제한조치 협조설비 구축비용을 모두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률 개정안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장비, 시설, 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한 비용을 보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개발과 관련된 직접비용
-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인력훈련비용
- 개발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설치에 관련된 비용
- 기타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와 관련된 비용

전기통신사업자의 비용 보전 신청을 접수하는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비용 보전 대상으로 삼은 장비, 시설, 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장비, 시설, 기술 및 기능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운용비용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 통신제한조치 요구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용비용에 관한 규정은 현행 통비법에도 규정된 부분이 있으며, 기존 조항을 고려하여 규정 추가 또는 기존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비용보전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1. 배경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15조의3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9>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15조의3

법률(신설안)
제15조의3(이행강제금) ①방송통신위원장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개정안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금액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기타, 전기통신사업자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금액 결

정,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2. 외국 사례

가. 미국

1) 이행강제 및 벌칙 규정

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 또는 법무장관은 통신사업자 등에게 의무 준수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의무를 즉시 준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통신전송·교환장비 제조업체가 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준수에 필요한 개선된 장비를 즉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 전송·교환장비 제조자 또는 전기통신 지원서비스 제공자에게 협조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명하는 명령서를 취득할 수 있다. 법원은 법집행기관이 통신 감청을 집행하거나 통화식별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른 통신사업자의 대체 기술 또는 능력이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 문제된 장비, 설비 또는 서비스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적용하면 협조의무 준수가 가능하거나, 적시에 조치를 취하였다면 협조의무 준수가 가능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이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원은 이행 명령을 발할 때, 적시에 준수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 통신사업자·장비제조자·서비스제공자의 사업 지속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명령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또는 시간의 지체 및 정의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 명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과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협조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 명령은 몇 가지 제한을 가진다. 먼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무장관이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용량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통신 감청과 통화식별정보 획득에 대한 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할 수 없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이행이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되고, 법무장관이 해당 비용을 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조의무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 더불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의무 준수를 위하여 1995년 1월 1일까지 배치

된 장비, 설비 또는 서비스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법무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비, 설비 또는 서비스가 협조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변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합리적 비용 지급에 동의한 경우
- 장비, 설비 또는 서비스가 교체 또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었거나 기타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통신사업자 등이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명령서 발부 이후 또는 법원에서 명시한 일자 이후의 위반에 대하여 1일당 최고 10,000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말 기준, 인터넷접속 및 상호연동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협조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얼마나 많은 벌금을 부과 받을 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FCC가 밝혔다고 보고된 바 있다. 민사 제재금의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반행위의 특성, 상황 및 범위
- 위반자의 지불능력, 위반자의 적시에 준수하려는 선의의 신뢰에 의한 노력, 위반자의 사업운영 지속 능력에 미치는 영향, 과실의 정도 및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소요되는 지연시간
- 판사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들

나. 기타 국가

1) 독일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5,000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영국

전기통신사업자가 고의로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이 부과되나, 실제로 통신사업자에게 벌칙이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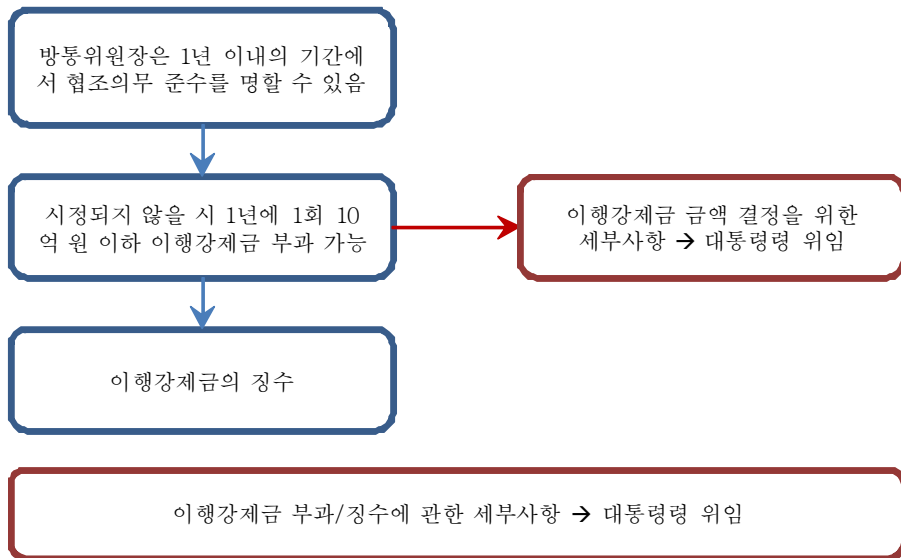
3) 호주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 불이행 시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5만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만 별도로 명시된 것은 아니며, 여러 종류의 불이행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 되도록 규정된 조항이다. 감청협조설비 구축 뿐 아니라, 전기통신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민사제재금의 부과 및 환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금전적 제재금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위반행위의 특성 및 정도, 위반행위의 결과로서 초래된 손실 또는 손상의 특성 및 정도, 위반행위가 일어나는 환경 및 유사한 행위로 전기통신법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 모든 관련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통신부장관, 호주방송통신위원회 및 호주공중거래위원회는 연방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금 환수를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 소송은 위반 후 6년 내에 시작해야 한다.

3. 검토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비법 개정안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그림 11> 통비법 개정안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금액 결정에 앞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감청협조설비 구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행명령의 여부 및 유예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의무의 예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지의 여부
-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및 상황의 변화
- 감청 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감청기능 구비의 기술적 난이도
- 감청 대상 서비스에 대한 감청 기술표준의 개발 시점 및 기능 개발 현황 등, 해당 서비스 제공업자의 전반적인 감청협조설비 구비 의무 준수 현황
- 국가가 보전하기로 한 감청협조설비 구축비용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
- 기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 또는 상황 이행강제금의 금액 결정을 위해서 다음 사항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감청 기술표준의 개발 시점, 해당 통신서비스에 대한 감청협조기능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통신사업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절하였는지의 여부
- 전기통신사업자가 적시에 협조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는지의 여부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도
-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의 특성 및 정도
- 이행강제금이 통신사업자 등의 경제적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이행강제금 지불 능력
- 타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례
- 기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 또는 상황

약 어

CALEA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1994
CMRS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DR	Data Retention
EC	European Commission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U	European Union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1978
FNA	Federal Network Agency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IOCA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ct
IS	Information Service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LEA	Law Enforcement Agency
LI	Lawful Interception
NTAC	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Centre
PMRS	Private Mobile Radio Service
PSHSB	Public Safety & Homeland Security Bureau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RIPA 2000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TAB	Technical Advisory Board
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